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9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3.

발 의 자 : 신원식 · 이태규 · 윤두현
한무경 · 하태경 · 임병헌
노용호 · 이헌승 · 최영희
김도읍 · 유의동 · 성일중
조명희 · 한기호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, 민방위를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, 응급적인 방재, 구조,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북한은 “핵무력 정책 법제화”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,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, 현재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민방위의 정의에 “핵 방호”를 명시하고, 이를 위한 대피시설

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(核戰)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1호).

법률 제 호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방공(防空)”을 “핵 방호(防護), 방공(防空)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대피호”를 “대피호(핵 대피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민방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(이하 “민방위사태”라 한다)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<u>방공(防空)</u> , 응급적인 방재(防災)·구조·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민방위 준비) ① 중앙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.	제15조(민방위 준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대피호</u> 등 비상대피시설의	1. <u>대피호</u> (핵 대피소를 포함한

설치	<u>다</u>)-----
	--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